

내국소비세법

1. 부가가치세법령상 용어와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② “일반과세자”란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 ③ 위탁매매를 할 때 해당 거래의 특성상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수탁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④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⑤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장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과세대상 숙박업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다.
- ②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 ③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때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 ④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당시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⑤ 사업자가 각종 경기대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신고 개설한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자등록의 등록사항 정정에 따른 정정신고 후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기한이 같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를 변경되는 경우
- ㄴ.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한 경우
- ㄷ.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 ㄹ.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 ㅁ.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7.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甲이 2021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임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수토지의 면적은?

- 상시주거용 단층 주택: 20 m²
- 부수토지: 300 m²(도시지역 밖에 있음)
-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① 0 m² ② 20 m² ③ 100 m² ④ 200 m² ⑤ 300 m²

8.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 공급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자가 사업용 취득재화를 사업을 위해 자기 고객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②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사업용 자산으로 물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③ 사업자가 폐업할 때 사업용 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④ 사업의 양수시 대리납부제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⑤ 사업자가 사업용 취득재화를 경조사에 사용인 1명당 연간 20만원 이하로 제공하는 경우 그 공급하는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9. 부가가치세법령상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는 주된 재화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②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된 재화의 공급은 독립된 거래로 보아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
- ③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용역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용역은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④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등의 여부는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 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0.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공급장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를 재화의 공급 장소로 한다.
- ② 재화의 기한부 판매인 경우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③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재화의 인도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④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⑤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1.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② 대가를 외국통화로 받은 경우로서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공급가액은 환가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④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⑤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12. 부가가치세법령상 수입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ㄴ.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유예할 수 있다.
- ㄷ.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입자는 수정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3. 일반과세자인 (주)대한의 2021년 제1기 과세기간(1월 1일~6월 30일)에 대한 거래내역이다. 부가가치세 납부 또는 환급 세액은? (단, 부가가치세 신고는 서면으로 적법하게 되었으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아니함)

- 국내 매출액: 200,0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음)
-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재화의 가액: 300,000,000원(부가가치세와 수출업자로부터 받은 관세환급금 20,000,000원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
- 적법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합계: 18,000,000원
- 적법하게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합계: 7,000,000원

- ① 3,000,000원 환급
- ② 5,000,000원 환급
- ③ 7,000,000원 환급
- ④ 25,000,000원 납부
- ⑤ 27,000,000원 납부

14. 부가가치세법령상 공동매입세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동매입세액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다.
- ② 도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도축 두수(頭數)에 따라 공동매입세액을 안분한다.
- ③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이나 공동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공동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 ④ 공동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안분된 금액은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 ⑤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동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5. 부가가치세법령상 의제매입세액과 관련하여 다음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업자가 (가)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나)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라)으로 공제할 수 있다.

- ① 가: 부가가치세, 나: 제외, 다: 매입세액
- ② 가: 관세, 나: 포함, 다: 매출세액
- ③ 가: 부가가치세, 나: 제외, 다: 매출세액
- ④ 가: 관세, 나: 제외, 다: 매입세액
- ⑤ 가: 부가가치세, 나: 포함, 다: 매입세액

16. 부가가치세법령상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는?

- 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② 「법인세법」에 따른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지출한 경우
- ③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 ④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⑤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17. 일반과세자 甲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2021년 7월 5일에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2021년 6월 25일에 대가의 전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대가는 2021년 제1기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 ② 2021년 7월 10일에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2021년 6월 30일에 대가의 전부를 받은 경우 그 대가는 2021년 제1기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③ 2021년 6월 20일에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재화를 인도하고 대가 중 잔금을 2021년 7월 10일에 받기로 한 경우 그 금액은 2021년 제1기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 ④ 2021년 7월 20일에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2021년 6월 2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21년 7월 1일에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는 2021년 제1기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⑤ 2021년 3월 20일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2021년 6월 20일에 받기로 한 경우 그 금액은 2021년 제1기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18.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 (주)대한의 공동매입세액 재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계장치를 2020년 4월 10일에 취득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 이 기계장치의 실지귀속은 구분할 수 없으며 2020년 제1기 과세기간에 공동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적법하게 안분하였다.
-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은 2020년 제1기 과세기간 30%, 2020년 제2기 과세기간 23%, 2021년 제1기 과세기간 25%이다.

- ① 2020년 제2기 과세기간과 2021년 제1기 과세기간 모두 공동매입세액의 안분을 재계산하지 않는다.
- ② 2020년 제2기 과세기간과 2021년 제1기 과세기간 모두 공동매입세액의 안분을 재계산한다.
- ③ 2020년 제2기 과세기간에는 공동매입세액의 안분을 재계산하며 2021년 제1기 과세기간에는 공동매입세액의 안분을 재계산하지 않는다.
- ④ 2020년 제2기 과세기간에는 공동매입세액의 안분을 재계산하지 않으며 2021년 제1기 과세기간에는 공동매입세액의 안분을 재계산한다.
- ⑤ 2020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동매입세액의 안분을 재계산한 결과 가산되는 세액은 2021년 제1기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다.

19.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 ㄴ. 사업자가 공기청정기를 대가를 받지 않고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 ㄷ. 사업자가 공기청정기를 대가를 받지 않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 ㄹ.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20. 보세구역 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만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 甲의 2021년 제1기 과세기간의 재화공급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2021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단, 제시된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

- 보세구역 내에서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 1,000,000원
-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 3,000,000원(발급한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은 1,000,000원임)
- 보세구역에서 제조하여 국외로 수출한 재화의 공급가액 2,000,000원
-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한 대가 1,000,000원

- ① 1,000,000원 ② 2,000,000원 ③ 3,000,000원 ④ 4,000,000원 ⑤ 5,000,000원

21. 부가가치세법령상 대리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과세대상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 ②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과세대상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받은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 ④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 ⑤ 대리납부세액을 징수한 자는 예정신고는 하지 아니하며, 확정신고시 대리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22.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

- ①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부동산임대용역
- ②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 ③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④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는 것
- ⑤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23. 부가가치세법령상 결정·경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세청장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결정·경정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 ③ 영수증발급 대상 사업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명자료로 보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만 경정할 수 있다.
- ④ 추계에 따라 납부세액을 결정·경정할 때 기재내용이 분명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도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24. 부가가치세법령상 간이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받는다.
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ㄷ.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5. 부가가치세법령상 장부의 작성·보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③ 사업자는 장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정보처리장치,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존할 수 있다.
- ④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제한 공급대가를 장부에 기록할 수 있다.
- ⑤ 간이과세자가 발급받았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보관하였을 때에는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26. 부가가치세법령상 일반과세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법인사업 자에 대하여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로 결정 하여 해당 예정신고기한까지 징수한다.
- ③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확정신고 시에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 ④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와 납부를 할 때에는 가산세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 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7. 부가가치세법령상 결정·경정의 사유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 아닌 것은?

- ①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 ②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 ③ 사업장의 상호와 사업의 종류를 빈번히 변경하는 경우
- ④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을 경우
- ⑤ 조기환급 신고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28. 부가가치세법령상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과세기간 종료일이 지난 후 6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 ②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로서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 ③ 조기환급기간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이므 로 제1기 과세기간 중 3월과 6월도 조기환급기간이 될 수 있다.
- ④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관할 세무서장은 결정·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경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29. 부가가치세법령상 소매업(부가가치율 10%)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였던 개인사업자 甲은 2021년 6월 1일에 간이과세포기를 신고하고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변경하였다. 甲이 다음의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 차감 납부할 세액은? (단,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하였으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아니함)

○ 공급대가 및 매입세액

구분	1월 1일~6월 1일	6월 2일~6월 30일	계
공급대가	39,000,000원	11,000,000원	50,000,000원
매입세액	1,500,000원	500,000원	2,000,000원

-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는 모두 과세공급대가이며, 영세율 적용대상은 없다.
- 매입세액은 모두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해 확인된 공제가능한 금액이다.

- ① 240,000원 ② 300,000원 ③ 500,000원 ④ 740,000원 ⑤ 3,000,000원

30. 부가가치세법령상 일반과세자에게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ㄷ.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31. 개별소비세법령상 개별소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별소비세는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 ② 유흥주점에서의 유흥음식행위는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다.
- ③ 과세장소 입장행위에 대한 과세표준은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다.
- ④ 개별소비세의 세율에는 잠정세율과 탄력세율이 포함된다.
- ⑤ 개별소비세는 면세되는 경우가 없다.

35. 개별소비세법령상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담배는 잠정세율 적용대상이다.
- ② 담배를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③ 담배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물품가격에 상관없이 과세표준 단위당 일정금액으로 한다.
- ④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반출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 ⑤ 전자담배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36. 주세법령상 면세주류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출하는 주류
 ㄴ. 주한외국대사관에 납품하는 주류
 ㄷ. 사원, 교회나 그 밖의 종교단체에 의식용으로 국내에서 기증한 주류
 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 목적으로 수거하는 주류
 ㅁ.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제조할 때 원료로서 사용되는 주류
 ㅂ.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보유자가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ㅂ ④ ㄱ, ㄹ, ㅁ ⑤ ㄹ, ㅁ, ㅂ

37. 주세법령상 용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알코올분’이란 전체 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코올(섭씨 18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
 ㄴ. ‘주류’에는 알코올분 함유량이 1도 이상이나 불순물이 함유되어 희석하여도 마실 수 없는 물품도 포함된다.
 ㄷ. ‘주조연도’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ㄹ. ‘주정’이란 녹말 또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발효시켜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을 말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8. 주세법령상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류를 수입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주세를 별도로 납부할 의무가 없다.
- ② 제조장에서 마신 경우라 하더라도 제조장으로부터 주류가 반출되지 않은 경우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 ③ 주류제조자가 면허취소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제조장에 현존하는 주류에 대하여 반출기간을 정하여 계속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 ④ 주세가 면제된 주정을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⑤ 주류를 위탁 제조하는 경우 주류 제조 수탁자가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9. 주세법령상 주세액의 환급이 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는?

- ① 변질의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경우
- ②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멸실된 경우
- ③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에 납품하는 경우
- ④ 외국 선원 휴게소에 납품하는 경우
- ⑤ 주정으로서 국가의 의료 의약품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40. 주세법령상 증류주류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반출된 주류에 대해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매수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돌려주는 경우 당초 반출했을 때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류의 가격으로 한다.
- ② 주류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의 가격에는 주류를 넣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조된 도자기 병의 대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③ 주류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의 가격에는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④ 수입하는 주류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하며, 관세는 제외한다.
- ⑤ 주류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의 가격에는 주류의 용기에 붙여 반출되는 것으로서 상품정보를 무선으로 식별하도록 제작된 전자 인식표의 가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